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17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이인선・이종욱・고동진

최은석 · 정성국 · 조경태

조지연 · 성일종 · 정동만
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 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 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 은 조 제8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	제14조(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
대한 과세특례) ① ~ ⑥ (생	대한 과세특례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	⑦
정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발	<u>2030년 12월 31일</u>
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	
한다.	
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	8
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	
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	
제1항제2호 · 제2호의2 · 제2호	
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	
규정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30년 12월 31일</u>
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	
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	<u>.</u>